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88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윤후덕 · 박지원 · 이용선
김태선 · 임오경 · 김정호
박 정 · 김주영 · 임미애
이재정 · 홍기원 · 한정애
이춘석 · 김준형 · 이재강
김병주 · 김용만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 등이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평화경제특구 지정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과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임·위탁 구조를 넘어서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

기 됨.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지정·구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
2.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지역 현장조사 지원
3. 국내외 타 특구 운영 현황 사례조사 지원
4. 평화경제특구 발전방안 연구·개발 지원
5.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중 “관련 법인·단체의 장”을 “관련 법인·단체의 장, 제38조의2에 따른 지원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8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u> ① <u>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1.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u> <u>2.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지역 현장조사 지원</u> <u>3. 국내외 타 특구 운영 현황 사례조사 지원</u> <u>4. 평화경제특구 발전방안 연구 · 개발 지원</u> <u>5.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u>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u>

에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u>관련 법인·단체의 장</u>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 ----- ----- ----- <u>관련</u> <u>법인·단체의 장, 제38조의2에</u> <u>따른 지원기관</u> ----- -----.
--	---